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 - 857호

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 8. 28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5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19. 9. 5. ~ 2019. 9. 25.
2. 공람장소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(☎ 02-3153-9364)
3. 공람사유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주민의견 청취 및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
4. 공람내용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	노고산동, 신수동 일대	76,078.6	-	76,078.6	

다. 일몰기한 연장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정비구역지정 일몰기간	비 고
기정	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	노고산동, 신수동 일대	2014. 8. 28. ~ 2019. 8. 27.	
변경			2014. 8. 28. ~ 2021. 8. 27.	2년 연장

5. 정비계획 및 도서 : 게재생략

6. 의견제출 :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
장소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